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13502
-------------	-------

발의연월일 : 2018. 5.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문화 차이로 인해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품목만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관리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특별관리품목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이하 “특별관리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품목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로의 수입이 가능하다.

③ 특별관리품목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관리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시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품목의 지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품목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 특별관리품목은 이 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특별관리품목의 해외제조 업소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운용 중인 특별관리품목의 수출 위생증명서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위생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1조의2(특별관리품목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사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이하 “특별관리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특별관리품목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로의 수입이 가능하다.</p> <p>③ 특별관리품목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특별관리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시 수출국 정부</p>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  
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품목의 지정 및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에 필요한 절  
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  
한다.